



김해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제 337호 2015. 8. 28.(금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제 2015-1885호 김해도시계획시설(울하택지개발지구공원-근린공원3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 열람 공고 16719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김해시 편집 : 홍보담당관 (330- 3011, 행정 3011)

김해도시계획시설(울하택지개발지구공원-근린공원3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 열람 공고

김해도시계획시설(울하택지개발지구공원-근린공원3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안에 대하여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5. 08. 28.

김 해 시 장

1. 건 명 : 울하택지개발지구공원(근린공원3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

2. 입안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53	근린 공원3	근 린 공 원	김해시 율하동 1362-9일원	33,850.90	-	33,850.90	2003.12.30.	

나.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변경내용

구 분	면 적(㎡)			비 고	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공원면적	33,850.9	-	33,850.9		
시설면적계	12,258.0	감) 113.0	12,145.0	기정시설율 : 36.2% 변경시설율 : 35.9%	
건축면적	바닥면적	150.0	감) 87.5	62.5	기정건폐율 : 0.4% 변경건폐율 : 0.2%
	연 면 적	270.0	감) 207.5	62.5	기정용적율 : 0.8% 변경용적율 : 0.2%

2) 변경사유

도면표시 번호	공 원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53	근린공원3	•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 변경	•올하 택지개발지구 내 노약자 편의향상을 위해 기 결정된 경로당의 합리적인 규모 조정을 반영 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코자 함.

다. 세부조성계획변경조서 : 게재생략

3. 열람기간 :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4. 관계도서·게재생략사항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김해시청 공원 녹지과

5. 기타자세한사항은 김해시청 공원 녹지과(전화 055-330-6924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